

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  
(무해약환급금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사 업 방 법 서

( 사업방법서 별지 )

## 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

### 1. 보험종목의 명칭

구분	종류 및 명칭
일반가입형	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_기본형
	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_체증형
간편가입형	무배당 간편가입 모두의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_기본형
	무배당 간편가입 모두의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_체증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1) 일반가입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본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75	만15	75
기본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73	만15	73
기본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70	만15	70
기본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5	만15	65
기본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60	만15	60
기본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5	만15	55
기본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기본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기본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기본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기본형	종신	종신	70	세	만15	65	만15	65
기본형	종신	종신	80	세	만15	75	만15	75
체증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68	만15	71
체증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69	만15	72
체증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66	만15	70
체증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5	만15	65
체증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60	만15	60
체증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5	만15	55
체증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체증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체증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체증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체증형	종신	종신	70	세	만15	65	만15	65
체증형	종신	종신	80	세	만15	69	만15	70

(2) 간편가입형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본형	종신	종신	5	년	30	80	30	80
기본형	종신	종신	7	년	30	78	30	78
기본형	종신	종신	10	년	30	75	30	75
기본형	종신	종신	15	년	30	70	30	70
기본형	종신	종신	20	년	30	65	30	65
기본형	종신	종신	25	년	30	60	30	60
기본형	종신	종신	30	년	30	55	30	55
기본형	종신	종신	55	세	30	50	30	50
기본형	종신	종신	60	세	30	55	30	55
기본형	종신	종신	65	세	30	60	30	60
기본형	종신	종신	70	세	30	65	30	65
기본형	종신	종신	80	세	30	75	30	75
체증형	종신	종신	5	년	30	80	30	80
체증형	종신	종신	7	년	30	78	30	78
체증형	종신	종신	10	년	30	75	30	75
체증형	종신	종신	15	년	30	70	30	70
체증형	종신	종신	20	년	30	65	30	65
체증형	종신	종신	25	년	30	60	30	60
체증형	종신	종신	30	년	30	55	30	55
체증형	종신	종신	55	세	30	50	30	50
체증형	종신	종신	60	세	30	55	30	55
체증형	종신	종신	65	세	30	60	30	60
체증형	종신	종신	70	세	30	65	30	65
체증형	종신	종신	80	세	30	75	30	75

다.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주계약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가입가능한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2억9천3백만원 이하	0%
3억원 이상 ~ 4억8천9백만원 이하	2%
5억원 이상	4%

- \* 특약보험료는 위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으로 인하여 높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가, 그보다 낮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가입금액 구간의 가입을 제한한다.

예시)

(가) 보험가입금액 9억 9천만 원: 할인 후 보험료 100만원

(나)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할인 후 보험료 99만원

(나)의 할인 후 보험료가 (가)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기 때문에, (가)의 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제한함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다.

##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13.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무해약환급금형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후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이하 “유해약환급금형”이라 한다.)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무해약환급금형의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이 계약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아래와 같다.

경과기간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0%
「납입기간」 경과 이후 ~	50%

【해약환급금 지급비율 예시】		
2024년 01월 01일 계약, 납입기간 20년납, 월납		
기준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2024년 01월 01일부터 2043년 12월 31일까지	0%
“납입기간” 경과 이후~	2044년 01월 01일 이후	50%

- 라. 회사는 무해약환급금형 및 유해약환급금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 마. 회사는 무해약환급금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 14.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가.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 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나.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 다.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 15. 기타

- 가. 이 상품의 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3호)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하며, 간소화된 계약전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 (2)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참조)을 받는다.
  - (3) 본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일반심사 대상인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무효를 원하면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단, 본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3)의 각 용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정의를 따르며,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또한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 (5) 간편심사상품의 청약 시,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청약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을 가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체 여부 재심사를 통해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동일한 담보의 일반가입형 상품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1호)

### 무해약환급금형 상품 계약자 확인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납입보험료 비교 예시표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부가한 계약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무해약환급금형	유해약환급금형	
<p>* 위의 예시표는 무해약환급금형과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의 보험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예시한 것으로, 상품별 세부적인 가입조건(납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상기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주계약의 유해약환급금형은 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유해약환급금형은 무해약환급금형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비교를 위한 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p> <p>* 고객계약할인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한 값입니다.</p>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무해약환급금형 상품의 해약환급률 비교						
기준	경과기간 (2025년 1월 1일 계약, 납입기간 20년납 가정)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지급되는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2025년 1월 1일부터 2044년 12월 31일까지		0%			
「납입기간」 경과 이후	2045년 1월 1일 이후		50%			
<p>*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전 보험기간동안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p> <p>* 상기 지급비율은 예시이며, 실제 가입하신 계약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해약환급금 비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만원, 만원미만절사)</span>						
경과기간	무해약환급금형(주1)			유해약환급금형(주2)		
	보험료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보험료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						
<p>* (주1) 위의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내용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주2) 위의 해약환급금은 비교를 위해 가입당시 내용을 유해약환급금형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으로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닙니다.</p>						

\*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을 부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는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의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후는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아래 옅고 크게 밑줄친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해약환급금이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앞의 비교표에 해당하는 비율인 무해약환급금형 상품을 선택하였습니다.
- 고객님의 가입하신 무해약환급금형 상품은 중도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에 다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보험계약자 ○○○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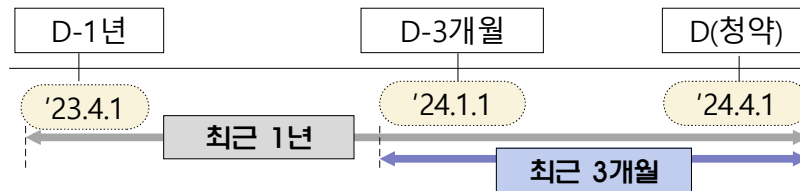
(별첨 제3호)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 ~ 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2,5년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2,5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 건강 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④ 질병확정진단 ⑤ 질병의심소견

※ 필요소견 및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